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홍기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22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12.
발의자 : 홍기원 · 윤후덕 · 한민수
한병도 · 김교홍 · 윤종군
이언주 · 박홍배 · 허영
서미화 · 전용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으로 보호 ·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·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달리 짧게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 · 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3제1항).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4조의3제1항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